
지배구조 모범기준(안)

2021.3.



목 차



I. 이사회 리더십	1
II. 주주권 보호	20
III. 감사	26
IV.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35
V. 참고문헌	4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 이사회 리더십

1. 이사회 역할과 책임

1.1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사회 지속가능성 검토) 이사회는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영활동이 지속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이 주주, 근로자, 고객, 협력사, 채권자 및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원 제공과 기여의 결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이사회와 경영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고 수익성·자본 효율성 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기업의 목표와 전략방향 수립 및 검토)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주요 경영전략과 계획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주요 경영의사결정이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기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ESG 리스크 관리)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를 중요 위험관리 사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및 경영진은 경영자원 및 자본의 배분(예: 고정자산, R&D, 인적 자원에 대한 비지니스 포트폴리오 및 투자 검토, M&A 및 투자자산 배분 결정 등)에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지속가능성 추구 기업문화 조성)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목적 및 가치, 경영전략, 정책, 관행 등이 기업문화와 일치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1.3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결정기능과 감독기능) 이사회는 기업운영의 중심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독·견제하고,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요기능〉

-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 기타 ESG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세부기능〉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의
- 대규모 자본지출의 결의
- 대규모 차입 및 지급보증의 결의
-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결의
-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
- 기업 인수합병 관련 주요사항의 결의
- 영업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의 결의
-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 최고경영자 승계 및 후보군의 육성·평가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감독
-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

- 리스크 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
- 조세 전략 · 거버넌스 수립 및 세무리스크 관리
- 정보공시의 감독
-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

(이사회 기능 및 권한사항 명문화)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 심의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4 이사회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 금지) 이사, 경영진 또는 주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내부거래는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를 의미하고, 자기거래는 이사, 경영진 또는 주주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 계열사 합병 및 분할, 계열사간 자본거래 등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의 내용 또한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실제적인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부거래 감독) 이사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감독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역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의 절차적 정당성 및 거래 조건 공정성의 판단근거를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판단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리스크 관리는 금융위기나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커져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비재무 요소인 ESG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 리스크 관리 위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는 여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준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전담인력) 기업은 전담인력의 배치와 책임자의 지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해야 하며,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검토) 이사회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매년 검토하고 검토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1.6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상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승계시스템 구축 책임)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될 자의 발굴, 육성, 최고경영자 및 고위 경영진의 은퇴, 고령화, 기타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 승계는 CEO 리스크를 방지하는 이사회 중요 업무에 해당하며, 특히 대표이사는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를 육성할 책무가 있다.

(경영승계 내부규정)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교육제도 등 관리 방법
-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지원부서의 구성·권한·책임사항
-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경영승계 주요사항 공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후보군 관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7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주요 업무) 최고경영자 승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경영승계계획 수립,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설정,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후보자의 발굴 및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에 권고되는 업무) 최고경영자 승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주총회에 추천 후보 선임 사유 · 대표이사 승계프로그램 ·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현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는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 기업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이사회의 책무) 이사회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의 감시·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해당 기업이 기업집단에 속해 지배주주 또는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가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경영권 방어행위의 감독)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자기주식 등 기업의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진과 주주 또는 경영진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적절한 절차와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대응 방안, 주주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0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요사항과 주요 경영진의 보수는 공시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성이란 각 기업이 중대성(Materiality) 평가를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의미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는 보수정책 수립) 이사회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임원의 등기·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경영진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

(허위 기재 등에 의한 성과보수 환수) 기업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회계부정,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등으로 발생한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보수정책 및 내역 공시) 기업은 실지급 보수금액, 실지급 대상 인원, 주요 경영진의 보수 내역과 보수 산정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보수정책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보수정책 및 산정근거 설명)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 및 보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주주의 참여와 감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의 기술개발,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 이사회는 경영진 및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회 평가의 필요성) 경영진 및 이사의 활동내용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사회 평가방법과 절차)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단위,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외부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직무수행 내용은 기업의 실적 및 주가상승률, 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여부, 동종 산업 내 타 기업의 보상내용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사회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가 활동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활동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며 경영진 및 이사에 대한 보상심의 또는 재선임 결정의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이사의 보수) 이사의 개인별 보수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며, 대표이사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사전에 마련한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이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성과목표를 공유 받고 재조정 및 승인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직무와 보수) 경영진 및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인 만큼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과도한 퇴직보상금 수령 제한) 기업은 과도한 퇴직보상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임원 퇴직보상금 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할 때 퇴직보상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기본보수 책정 및 지급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 본 모범규준에서 이사란 등기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2. 이사의 역할과 책임

2.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사의 주의의무) 기업과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기업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정보 수집 및 법령 위반 감독) 이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주의를 다하여 살펴야 한다.

2.2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사의 기업비밀 이용행위는 그것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주주, 채권자 등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2.3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기업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 이사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이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과 계약이나 기타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그 내용 및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서도 안 된다. 이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재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이사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기업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수도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 다만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사기, 위법, 이해상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5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거액화되고 있다. 이 경우 이사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책임추궁소송의 실효성이 감소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이나 제3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는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부담 설정) 그러나 기업이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전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기업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3. 이사회 구성

3.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정 이사회 규모) 이사회 규모는 기업 규모, 영업의 환경 및 특성 등에 적합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적정하고 신속하며 신중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3.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목적) 사외이사제도의 핵심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적정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규모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감독·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대규모 상장법인이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의미한다.

3.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등기이사의 자격요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의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3.4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자란 당해 기업에 적합한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사 임기의 존중)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현저한 직무 부적합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이사가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가 존중되어야 한다.

3.5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경험·능력·성별을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고 효과적인 토론을 거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4. 사외이사

4.1 사외이사는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는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기업 및 특수관계인과 직접적인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 계열사, 연결모자회사,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 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기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말한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스스로도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기업은 사외이사 후보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공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기업·경영진·지배주주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타 이해관계 공시)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더라도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외이사는 즉시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3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과도한 겸직 및 경업 금지) 다수의 기업에서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사외이사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의 영위

사업과 연관된 경제적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에 속한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직 등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4.4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 할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자신의 결정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제공된 자료를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직무수행)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사외이사는 장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등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여 경영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주를 포함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사회 운영

5.1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감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임사외이사(lead outside director)를 선임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 내 이사회 의장, 선임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의 책임은 각각 명문화되어야 한다.

(선임사외이사의 역할)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또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이사회 의장은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의 역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리더로서 개방적인 토론과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의장은 이사와 이사, 이사와 주주, 이사와 이해관계자, 이사와 경영진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 이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제정의 필요성) 이사회는 다수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권한, 구성,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4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정기이사회 개최의 필요성)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정기이사회 개최빈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이사회 일정의 수립)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기이사회를 규정하거나 직전 이사회에서 차기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외이사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일자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이사회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5 이사회 및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토의 및 결의된 내용과 이사 개인별 발언 및 찬반 등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은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상세하고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이사는 해당 회의록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5.6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통신수단의 활용과 참여의 기회 보장) 이사회는 모든 이사에게 동등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부 이사가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통신수단(음성 또는 화상 및 음성)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7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사외이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이나 경영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외이사들이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외이사가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청 권한) 사외이사는 기업의 경영목표나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는 기업의 업무담당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기업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5.8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지원 제공)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임·직원이나 법률고문·경영자보상 관련 컨설턴트 등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소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5.9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사외이사 회의의 운영) 사외이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외이사 간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 중에서 대표(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의 회의를 주관하게 하거나 사외이사가 위임하는 중요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할 선임사외이사의 성명과 선임 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은 사외이사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소통) 기업은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경영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5.10 이사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이사는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된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이사의 역할 효율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1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개별 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는 각 활동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결과는 이사회 승계 및 이사회 운영 개선에 활용된다.

(개별 이사 평가) 전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개별 활동 및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결과는 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5.12 이사회는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사회 권한 위임의 의의)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제외한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게 대폭 위임하거나,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6.1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목적) 시간적·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전체 이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적합한 이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를 발굴하는 것이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설화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뿐 아니라 상근감사위원 후보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규모 상장법인이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의미한다.

(보상위원회의 역할) 보상위원회는 이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사의 보상수준을 결정한다.

(내부거래위원회의 역할) 내부거래위원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거래가 공정한 절차 및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 및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함으로써 실질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공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개최 및 활동내역 공유) 각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주주총회에 그 활동내용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6.2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요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보수 결정, 내부감사, 내부거래, 사외이사후보 추천에는 높은 독립성이 요구되며, 사외이사에 의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도한 위원회 중복 소속 지양)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6.3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위원회 결의 반복 지양)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이사회 내 위원회는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위원회의 설치목적
-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 위원회의 연간 활동 및 성과평가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면
- 위원회의 구조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

Ⅱ. 주주권 보호

1. 주주의 권리

1.1 기업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업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의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2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주권 보호가 요청되는 주요사항)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의 증가 등

(주주권 보호 방안 강구)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사업 및 소유구조 변동에 있어 반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대규모 자산양수도
등 기업의 존립 및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여 주주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기업은 1주 1의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이해관계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현행 상법은 모든 주주에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 및 일부 법령은 예외적으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의 무제한적 의결권 행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1.4 이사회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제도) 기업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이익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제도가 중요하다.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주식매수가격은 기업과 반대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가 기업인수에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해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제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기업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반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다른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배주주의 정의) 지배주주는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 등 당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는 개인, 법인, 기관투자자 등 모든 주주를 포함한다.

(지배주주의 책임) 기업경영의 책임은 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이사회 경영진의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해당 이사회

경영진이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소수주주권 보호) 기업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과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여는 이사의 책임 강화나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억제될 수 있다.

2. 주주총회

2.1 이사회는 다양한 주제의 의제 또는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열린 논의 환경 구축) 주주총회는 주주와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주주 다수의 의견을 듣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구다. 주주의 관심사항이 전통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주제 및 형태의 안건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의안의 분리 상정) 임원 선임이나 정관 변경과 같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임원 또는 조문마다 의안을 분리 상정하여 안건별로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의안 관련 정보 제공)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결정) 그리고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주주의 참석이 용이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소수주주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총회 개최의 통지) 기업은 최대한 많은 주주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급적 주주총회 개최일 28일 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2.4 기업은 주주가 이사 및 감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원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기업은 주주에게 임원후보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원후보에 대한 정보는 주주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원후보자에 관한 공시) 다음 사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최대주주와의 관계
- 계열회사와의 최근 5년 이내의 관계
- 세부 경력 및 이사회 추천 사유
- 해당 회사 및 계열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사업상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
- 최근 5년 이내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의 유무
- 최근 3년 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균 참석률

2.5 기업은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가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에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업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안건을 최대한 빨리 공시하여 주주가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임장 권유에 대한 지원) 회사는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의결권 대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주주명부를 제공하거나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활용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져 대면 총회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전자통신 수단의 발달과 외국인주주 및 소액주주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주가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투표용지, 참고서류 및 반송용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권 행사 지원) 이사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주제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은 주주가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할 때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6 이사회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 이사후보의 선정과 이사의 선임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후보의 선정과 이사의 선임 과정에 소수주주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주주 참여) 다양한 주주의 참여 증대로 인해 주주의 지향점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사후보의 선정과 이사의 선임 과정에 이러한 주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이사의 선임 시 주주 추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집중투표제 채택의 목적)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2.7.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안건은 다른 이사 선임안건과 분리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안건 분리) 감사위원의 과반수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는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8.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주주권 행사 방해 행위 금지) 주주총회 개최 전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다툼을 방해하거나 충분한 토론을 막는 행위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의안결의 전에 충분한 질의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주주총회 결과의 공개) 현장 표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은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를 공개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결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Ⅲ. 감사

1. 내부감사

1.1 대규모 상장법인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경영활동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현대 기업에서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본 모범규준에서의 대규모 상장법인이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의미한다.

1.2 감사 및 감사위원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감사 및 감사위원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기업과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자, 계열사, 연결모자회사,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 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기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말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사 및 감사위원 스스로도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최소 2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구성)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의 원만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신분 보장의 필요성)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신분을 보장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감사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추 필요는 없으나 회계기준,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위원 중 적어도 2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일 것이 요구된다. 이때 구체적인 관련 경력 및 향후 기대되는 역할 등 해당 위원이 재무·회계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부정행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발, 사실 조사, 후속 조치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주요 업무 (1): 직무집행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뿐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2): 재무보고 검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 주주 뿐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협력사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주요 업무(3): 회계기준 타당성 평가)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이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4):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6): 내부감사부서 활동 감독 및 평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7):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사후 보고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추천 시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업무 (9): 외부감사인 평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감사업무에 따른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경우 당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요 업무 (10):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승인) 회계감사 이외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러한 사전 승인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11): 외부감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12): 이사 부정행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발, 사실 조사, 후속 조치 등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내지 감사 직무규정 마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목표, 사명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권한, 의무, 책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만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감사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6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외부감사인 등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분기별 개최의 필요성) 분기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기보고 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직원, 외부감사인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 참석 대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외부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영진의 업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의 경우에는 경영진은 참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1.7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감사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감사록은 이사회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부 정보 접근성 확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문도록 내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 자문 활용에 대한 지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인 협력 뿐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또는 기타 관련 내규에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이용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의 배경·내용·비용과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독립성 및 주요 활동내역 공시)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무,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 이행 여부 및 기타 주요 활동내용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10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업무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업무의 양과 책임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다른 명목의 보상은 받지 않아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업무 및 책임을 고려한 적정 보수 지급)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산정 시에는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이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가 감사위원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수 지급)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향후 제공할 미래 서비스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연금 또는 이연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직무 외 보수의 사례로는 회사의 연구용역, 법률자문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지급되는 보상, 해외여행·골프장 이용 등 복지 형태의 보상 등을 들 수 있다.

1.11 기업은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윤리규정의 주요 내용) 산업별/기업별로 주요 부패방지 이슈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반영한 고유의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은 청렴성과 신뢰, 정직성을 바탕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하되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차별 금지
- ✓ 임직원의 사익편취 금지
- ✓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지
- ✓ 임직원의 부패행위 금지
- ✓ 임직원의 돈세탁 및 내부자 거래 금지
- ✓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
- ✓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독과점 및 반경쟁 행위 금지)
- ✓ 회사 또는 고객의 비밀 정보 및 내부 정보 등 정보기밀 준수
- ✓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 ✓ 환경·안전·보건·의식 함양
- ✓ 불법적·비윤리적 행위 발생시 보고 의무 및 내부고발 보호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윤리규정의 적용 대상을 자사 근로자 뿐 아니라 자회사, 계약업체, 협력사, 합작 투자사까지 포괄하여 기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윤리규정 준수를 독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윤리규정 준수 이행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공급망과 이해관계자의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 규정 준수 노력) 기업은 윤리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 및 절차를 구축하고 제3자 기관에 의한 심사, 검증,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전사적 측면과 각 부서별 측면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보고라인을 구축하며, 헬프데스크, 핫라인, 옴부즈맨 등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준수를 근로자 성과 평가와 징계 및 보상 체계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

2.1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해당 기업과 그 경영진, 지배주주, 연결모자회사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기업의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는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회계감사 외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이 없는 경영자문 등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성공보수 약정 설정
-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가 3년을 초과하여 감사

2.2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용이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참석) 기업이 주주의 경영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협의 및 보고사항)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대한 회계정책
- 경영진의 판단이 미친 회계처리와 회계추정
- 중대한 감사수정사항
- 경영진과 의견이 불일치되는 사항
- 외부감사 수행 시 애로사항 등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여야 한다.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IV.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1.1 이사회와 경영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장 또는 소통 담당 사외이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필요성) 이사회와 경영진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또는 우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소통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넓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

(ESG 논의 확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은 기업의 지배구조 뿐 아니라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에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의 의견이 교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 담당 사외이사의 지정)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의사결정에 대해 파악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통의 결과 공유) 소통 담당 사외이사는 소통을 통해 지득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이사회에 공유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반대가 있었던 안건에 대해 사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반대 주주와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총회 결과 검토) 이사회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 주체이므로 안건의 가결 여부 뿐 아니라 찬반 결과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상당한 수준의 반대가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반대 주주와의 소통 및 사후 조치 공개) 이사회는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반대 주주의 우려를 해소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안건 반대 주주와의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주주의 반대 비율 고려) 상당한 수준의 반대 비율은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설정하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찬성 비율은 제외한 실질적 반대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보 공개

2.1 기업은 주주에게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 주주는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항 이외에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은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 및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여야 한다.

2.2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성) 기업의 영위에는 주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객, 협력사, 채권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도 필요한 기업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기업은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

2.3 기업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의 중요성) 기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시는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로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주요 공시 항목) 기업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외에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적시에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주요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공시 외 주요사항 결정에 대한 정보
- 2) 경영성과,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
-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 4) 지배구조 관련 공시 등

(주요 공시 항목 (1): 정기공시 외 주요사항 결정에 대한 정보 공시)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무공시사항뿐만 아니라 공시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기업은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 내용 외에 참석이사와 표결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기업이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재무구조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기업의 재산, 영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 채권, 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중요한 투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의 경영권 및 관리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배당의 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변경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참석 이사별 표결 결과, 반대사유 및 수정의견

(주요 공시 항목 (2): 경영성과 및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 공시) 기업은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예측재무정보는 최소한 향후 3년간의 예측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예측정보라는 사실, 예측정보의 가정 또는 판단근거 및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시하고 불리한 사항은 공시를 회피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기밀사항과 같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과 연구개발성과와 같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 공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자이므로 기업은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지분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과 기업에서의 지위, 기업과의 거래관계 등이 적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 (4): 지배구조 관련 공시) 기업은 자신의 고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설계하므로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이 모범규준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기업지배구조와 본 모범규준과의 차이 및 그 이유, 향후 변경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거나, 홈페이지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여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기업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대표이사 및 CFO의 책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사항이 정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 자료를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검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5 기업은 정보 공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개의 필요성) 산업의 다각화·첨단화·전문화로 기업정보가 전문용어로만 공시될 경우 정보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정보는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해설을 병기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도 지양되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한 공시의 필요성) 기업은 영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수시공시사항 및 기업설명회 자료를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감사·보상·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기업윤리규정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권고한다.

2.6 외국인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사항을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공시의 필요성)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숫자 및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를 감안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문공시의 필요성이 크다. 공시에 있어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다수의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만이라도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기업은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시책임자 지정 필요성)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 정보전달체계 마련) 기업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시책임자에게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공시가 필요한 정보 발생 시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V. 참고문헌

1. COSO, 2018, "Enterprise Risk Management"
2. FRC, 2018, "Guidance on Board Effectiveness"
3. FRC, 2018,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4. HKEX, 2018, "HK Corporate Governance Code(Appendix14 of the Main Board Listing Rules)"
5. ICGN, 2017,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6. ISG, 2018,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U.S. listed companies, ISG Governance Principles"
7. JPX, 2018,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8. OECD, 201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9. OECD, 2015,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0. Monitoring Commissie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6, "The Dutch Corporate Governance Code"
11. NYSE, "Listed Company Manual"
12. 금융위원회, 2014,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13. 상법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채이배의원 등 10인, 2020, 상장회사법안
1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07, "이사회평가 가이드라인"
1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08, "보상위원회 가이드라인"
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 "사회모범규준"

2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6,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9,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